



브라질의 부패방지법

김 성 천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I. 서론

II. 부패방지법의 입법과정

1. 2002년 형법 개정
2. 2010년 법안
3. 2013년 의회안
4. 2013년 대통령 공포

III. 부패방지법의 주요 내용

1. 위법행위
2. 제재수단
3. 감면제도(Do Acordo de Leniência)

IV. 결어

“글로벌(Glocal)”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로서, 교통, 통신수단 등의 발달로 생활권이 글로벌화 되어 경제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 평화문제 등에서는 국가 간 상호의존이 높아지면서도 국가를 대신하는 단위로서의 지역의 역할이 여전히 강조됨을 의미합니다. 이에 최신외국법제정보는 글로벌과 로컬의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고자 합니다.

I. 서론

부패(Corruption)는 인류의 역사 만큼 오래된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로서 국가차원은 물론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부패는 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공공의 신뢰를 파괴하며, 법치주의를 저해한다. 특히, 부패는 경제성장의 심각한 장애물로서 선진국, 신흥경제국 및 개발도상국에게 심각한 도전이다. 20세기 후반 시장의 세계화 속에서 부패는 국내 부패문제를 넘어 국제사회의 시급한 문제로 등장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상거래에서의 부패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1997년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ion Practices Act, FCPA)¹⁾을 제정했고, 이를 계기로 OECD는 1997년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이하 ‘OECD 뇌물방지협약’이라 함)²⁾을 채택하여 회원국으로 하여금 부패방지법제의 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 부패 및 뇌물근절을 위한 노력은 확산되어 UN은 2003년 부패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이하 ‘UN 부패방지협약’이라 함)³⁾을 채택하였고, 영국의 2010년 뇌물법(Bribery Act)⁴⁾ 등이 제정되면서 글로벌차원의 부패방지 및 척결은 국제사회의 공통과제가 되었다.

국제사회에서 부패방지법제의 정비가 시급하게 요구되는 국가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와 뇌물공여지수가 높게 나타난 브라질,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신흥경제국(BRICs)이었다.⁵⁾ 이 중 2014년 월드컵 및 2016년 올림픽을 개최하는 브라질은 관료, 정치인,

1)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처벌하는 미국 연방법으로 OECD 부패방지협약 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에 대해서는 오택림, “미국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에 관한 연구”, 법조, Vol.669, 2012. 6; 국민권익위원회 용역연구보고서(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 해외 반부패 입법동향 및 대응방안연구 -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에 관한 한국기업 및 정부에 대한 지침서, 2013년 참고.

2) OECD 뇌물방지협약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 처벌하고 더 나아가 ‘공정한 경쟁의 장’ 구축을 위해 국제상거래상 뇌물공여를 범죄로 규정한 최초의 국제규범으로 1999년 2월 발효되었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전문 및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UN 부패방지협약은 2003년 10월 31일 제58차 UN총회에서 체결된 부패방지 국제규범으로 부패범죄와 관련된 사범공조와 자산 환수를 위한 국제협력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협약은 제1장 총칙, 제2장 예방조치, 제3장 범죄규정 및 법집행, 제4장 국제협력, 제5장 자산 회복, 제6장 기술지원·정보교환, 제7장 이행체제, 제8장 최종조항 등 총 8장 71조로구성되었다.

4) 영국 뇌물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뇌물법은 일반뇌물범죄,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영리단체의 뇌물예방 실패, 기소 및 처벌, 위반에 대한 기타 조항 등 총 2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 뇌물법(2010) 원문과 번역문은 <http://www.acrc.go.kr/acrc/file/file.do?command=downloadFile&encodedKey=MjU0MzJfMQ%3D%3D> 참조.

5)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2013)와 뇌물공여지수(2011)에 따르면 주요 국

경찰 등의 각종 부패리스크에 노출되어 내국민은 물론 미국⁶⁾ 등의 국가나 OECD 등의 국제 기구로부터 부패방지법제 정비의 압력을 받아 왔다. 브라질은 2013년 부패비용 530억 달러로 GDP의 2.3%에 이르고 있다.⁷⁾ 국내외 압력의 산물로서 브라질은 연방법으로 부패방지법(Lei N° 12,680/2013)⁸⁾을 2013년 10월 1일 제정했고, 201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하면서 부패척결 의지를 표방했다.

본고는 부패방지법제의 국제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향후 우리나라 부패방지법제의 발전에 참고가 될 입법자료로 브라질 부패방지법의 입법과정,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부패방지법의 입법과정

1. 2002년 형법 개정

브라질은 OECD 뇌물방지협약(2000년 10월 24일 가입)⁹⁾, UN 부패방지협약(2003년 12월 9일 서명, 2005년 6월 15일 가입)¹⁰⁾ 등 중요한 국제부패협약에 가입하고 있다.¹¹⁾ 브라질

가의 순위와 점수는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해서는 <<http://www.transparency.org/country>> 참조.

구분		덴마크	미국	한국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부패인식지수 (2013)	순위(177개국)	1	19	46	72	127	80	94
	점수(100점)	90	73	55	42	28	40	36
뇌물공여지수 (2011)	순위(28개국)	1	10	13	14	28	27	19
	점수(10점)	90	8.1	7.9	7.7	6.1	6.5	7.5

- 6) 미국 해외부패방지법과 브라질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Campell, Stuart Vincent, Perception is not Reality : The FCPA, Brazil, and the Mismeasurement of Corruption, Minnesot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2(1), 2013 참조.
- 7) Stroker, Franck, How Brazil's Clean Companies Act will Affect Emerging Markets, Cipe Development Blog, 2014.2.13, <http://www.cipe.org/blog/2014/02/13/how-brazils-clean-companies-act-will-affect-emerging-markets> 참조.
- 8) 브라질 부패방지법의 본래 명칭은 “Lei N° 12.846, DE 1° De Agosto De 2013 Dispoe sobre a responsabilizacao administrativa e civil de pessoas juridicas pela pratica de atos contra a administracao publica, nacional ou estrangeira, e da outras providencias” 이다. 영문으로는 Anti-Corruption Act, Clean Companies Act 등으로 불리는 데 이 글에서 부패방지법이란 용어로 사용했다.
- 9) OECD 뇌물방지협약의 가입 현황에 대해서는 <http://www.oecd.org/daf/anti-bribery/countryreportsonteimplementationoftheocdanti-briberyconvention.htm> 참조.
- 10) UN 부패방지협약의 서명 및 가입 현황에 대해서는 <https://www.unodc.org/unodc/en/treaties/CAC/signatories.html> 참조.
- 11) 2000년대 초 브라질 부패방지법제의 현황에 대해서는 Goel, Asheesh and Micholas M. Berg, Leslie A. Wright, Recent Anti-Corruption Development in Brazil, 2012.2.2, in Goel, Asheesh, International Anti-Bribery and Corruption

은 2002년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제정비 일환으로 형법을 개정했다(Lei N° 10.467).¹²⁾ 브라질 형법은 이미 부당이득죄(제316조), 소극적 뇌물죄(제317조), 적극적 뇌물죄(제333조) 등이 있었지만, 국제거래에서의 적극적 뇌물죄(제337-B조), 국제거래에서의 영향력행사(제333-C조), 해외공무원의 정의(제337-D조)를 신설했다. 그러나 해외공무원이나 공공기관직원에 대한 사적 개인에 의한 뇌물행위만을 범죄화했고, 해외공무원이나 공공국제기구직원에 의한 뇌물행위는 범죄화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사적 영역에서의 부패범죄와 뇌물도 범죄화하지 못했다.

2007년 브라질 정부는 OECD로부터 강한 부패방지법의 시행을 요구받았다.¹³⁾

2. 2010년 법안

브라질 정부는 OECD 뇌물방지협약, UN 부패방지협약 등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해 2010년 2월 8일 의회에 부패방지법안(Projecto de Lei 6826/2010)을 제안했다¹⁴⁾. 2010년 법안은 총 6장 2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1장 총칙, 브라질 및 외국공무원에 대한 위반행위, 제3장 법인의 행정책임, 제4장 행정절차, 제5장 민사책임, 제6장 보칙 등이다. 2010년 법안은 OECD 뇌물방지협약, UN 부패방지협약,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영국의 뇌물법 등 뇌물 및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의 내용을 수용했다. 주요 내용은 뇌물제공법인의 행정책임 및 민사책임으로, 행정벌의 한도는 법인 전년도총수입의 30%로 규정하고(제7(I)조), 총수입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R\$ 6,000에서 R\$ 6,000,000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제7조 제2항).

Trends and Developments, 2012 www.ropesgray.com) ; Ribeiro, Marilda Rosado de Sá and Carolina Araújo de, The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and Foreign Investment in Brazil : Some Responses against Corruption, Panorama of Brazilian Law.Vol. 1, No.1, 2013 참조.

12) 브라질 형법 개정에 대해서는 <http://www.oecd.org/daf/anti-bribery/brazil-oecdanti-briberyconvention.htm> 참조.

13) Boadle, Anthony, Brazil enacts tough anti-bribery law required by OECD, Reuters, 2013.10.2, <http://www.reuters.com/article/2013/08/02/us-brazil-bribery-idUSBRE97111A20130802>; OECD WorkingGroup on Bribery, Annual Report 2007, <http://www.oecd.org/daf/anti-bribery/anti-briberyconvention/40896091.pdf> 참조.

14) 2010년 법안에 대해서는 http://www.camara.gov.br/proposicoesWeb/prop_mostrarintegra?codteor=734764&filena me=PL+6826/2010 참조.

3. 2013년 의회안

부패방지법안이 의회에 계류 중인 2011년 9월 7일 브라질 독립기념일에 2만5천명이상의 국민이 부패에 연류된 정치인의 면제에 대해 거리시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브라질 의회는 법안 제안 이후 2년 후 기업의 의견을 반영한 부패방지법안을 의결했다. 하원은 2013년 4월, 상원은 7월에 가결해, 대통령에게 이송했다. 2010년 법안과 달리 2013년 의회 법안은 행정벌 한도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었고, 감면제도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첫째, 행정벌의 한도액에 변경되었다. 2010년 법안에서는 법인 전년도 총수입의 30%이었으나, 0.1% ~ 20%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총수입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한도액은 R\$ 6,000 ~ R\$ 6 Million에서 R\$ 6,000 ~ R\$ 60 Million로 확대되었다.

둘째, 제6장에 감면제도에 관한 내용이 신설됐다.

4. 2013년 대통령 공포

브라질 대통령 호세프(Dilma Rousseff)는 2013년 10월 1일 일부 조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패방지법(Lei N° 12.846/2013)을 서명·공표해 201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호세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조항은 3개 조항이다.¹⁵⁾

첫째, 행정제재를 계약의 범위내로 제한한다는 제6조 제3항이다. 이는 전년도 총수입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전년도 총수입 20% 보다는 높더라도 R\$60 Million까지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OECD 뇌물방지협약의 요구사항을 부패방지법에 반영한 것이다.

둘째, 정부가 일정한 제재수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도 내지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제19조 제2항이다.

셋째, 위법행위에 공무원의 참여정도에 따라 법인의 감면을 추가해 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제7조(X)이다.

15) 호세프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된 부패방지법의 규정에 대해서는 <http://www.internationaltradecomplianceupdate.com/blog.aspx?entry=882> 참조.

III. 부패방지법의 주요 내용

부패방지법은 총 7장 3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⁶⁾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 브라질 및 외국공무원에 대한 범죄행위, 제3장 법인의 행정책임, 제4장 행정절차, 제5장 감면, 제6장 민사절차, 제7장 보칙 등이다.

이하에서 OECD 뇌물방지협약, UN 부패방지협약,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영국의 뇌물법 등과 비교하여 브라질 부패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서술한다.

1. 위법행위

1) 위법행위의 정의

부패방지법은 OECD 뇌물방지협약의 뇌물제공(Bribery)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이에 해당하는 용어로 제2장의 제목에서 국내행정기관 및 외국행정기관에 대한 위법행위(Dos Atos Lesivos a Administracao Publica Nacional ou Estrangeira)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장). 이런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제5조).

첫째, 공무원이나 공무원과 관련된 제3자에게 부적절한 이익을 약속·제의 또는 공여하는 행위

둘째, 불법행위를 위한 자금조달, 모금, 후원, 보조하는 행위

셋째, 위법행위의 이득의 내용이나 실제 이익을 숨기거나 위장하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의 제3자를 이용하는 행위

넷째, 공경매와 공공계약의 경쟁을 방해하거나 사취하는 행위

다섯째, 공공기관의 조사업무나 감시업무를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행위

위법행위의 범위는 OECD 뇌물방지협약보다는 넓게 규정되어 있다.

부패방지법은 국내공무원 및 외국공무원을 적용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적용하는 OECD 뇌물방지협약이나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과는 다르다.

16) 브라질 부패방지법 포르투갈어 원문과 영어 번역본은 <http://www.loboeibeas.com.br/wp-content/uploads/2013/11/Anti-Corruption-Act.pdf> 참조.

2) 책임주체

부패방지법은 법인(Pessoa Juridica)을 책임주체로 규정하고 있다(제1조). 법인에는 기업 등 영리법인은 물론 비영리법인 등 모든 형태의 법인을 포함한다. 위법행위에 참여·가해·공동가해하는 자연인, 이사, 사원 등도 책임을 진다(제3조). 모회사, 자회사, 계열회사, 공동회사 등은 위법행위를 한 법인과 관련된 회사는 각각의 계약범위 내에서 행정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제4조 제2항).

3) 형사책임 불인정

부패방지법은 법인의 행정책임(Da Responsabilizacao Administrativa) 및 민사책임(Da Responsabilizacao Judicial)만 규정하고 있다. 부패방지법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의 범죄화를 요구하고 있는 OECD 뇌물방지협약과 달리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는 브라질 헌법이환경침해에 대해서만 법인의 형사책임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제225조 제3항). 독일 1998년 해외부패방지법(Gesetz zu dem ÜÜbereinkommen vom 17. Dezember 1997 über die Bekämpfung der Bestechung ausländischer Amtsträger im internationalen Geschäftsverkehr)도 법인의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¹⁷⁾ 우리나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은 양벌규정(제4조)¹⁸⁾을 통해 법인의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부패방지법은 법인의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OECD 뇌물방지협약의 범죄인 인도에 관한 규정도 없다.

4) 엄격책임

부패방지법은 법인에 대해 민사 및 행정의 엄격책임을 규정하고 있다(제1조). OECD 뇌물방지협약은 협약상 정의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할 의도가 있는 자에게 적용되고(제1조 제1항),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은 부패의도의 사실확정을 규정하고 있다.¹⁹⁾ 그러

17) OECD, Germany : Review of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1997, Recommendation, <http://www.oecd.org/investment/anti-bribery/anti-briberyconvention/2386529.pdf> 참조.

18) 1998년 제정시에는 제4조의 표제를 법인의 형사책임이라 했으나, 2010년 개정시 양벌규정이라 변경했다.

19) 15 U.S.C. §§ 78dd-1, 78dd-2, 78dd-3, 78m, and 78ff.

나 부패방지법은 법인의 이익이나 이득을 위한 위반행위가 있는 한 법인은 책임을 진다.²⁰⁾

2. 제재수단

부패방지법은 OECD 뇌물방지협약 보다는 더 강한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1) 행정벌(Multa)

부패방지법은 법인 전년도 총수입의 0.1%에서 20%의 범위에서의 행정벌을 규정하고 있다(제6(I)조 제1항). 총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R\$ 6,000에서 R\$ 60,000,000을 부과한다(제6(II)조 제4항). 행정벌은 부패방지법의 뇌물제공행위로부터 얻은 이득 이상이어야 한다(제6(I)조 제1항).

부패방지법은 집행기관이 과태료의 부과정도를 판단하는 9가지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제7조). ① 위반의 심각성, ② 위반자가 얻거나 원하는 이득, ③ 위반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④ 손해의 정도나 손해의 위험, ⑤ 위반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 ⑥ 침해자의 재산상태, ⑦ 위반 조사 시 법인의 협조, ⑧ 내부 청렴기구, 절차, 감시, 내부고발추진, 법인의 윤리 및 행동규범의 효과적 이행, ⑨ 법인과 피해공공기관이나 기구사이의 계약의 가치 등이다.

2) 불리한 결정의 특별공개(Publicação extraordinária da decisão condenatória)

부패방지법은 법인에 대해 불리한 결정으로 상당히 강한 행정벌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불리한 결정에 대한 특별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부패방지법은 법인에 대해 불리한 결정의 요약은 최소한 3곳에서 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제6(II)조 제5항). 첫째,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법인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넓게 유통되는 간행물, 둘째, 법인 설치 및 영업장소 셋째, 법인의 웹사이트 등이다. 요약문은 법인의 비용으로 대중이 볼수 있는 방식으로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20) Latham & Watkins, Commentary Brazilian Anti-Corruption Law: 7 Implications and Challenges for Companies Doing Business in Brazil, No. 1629, 2014.1.6, <http://www.lw.com/thoughtLeadership/lw-brazil-anti-corruption-law>.

3) 민사책임

부패방지법은 법인에게 행정책임에 추가하여 민사책임(Da Responsabilizacão Judicial)을 부과한다(제4장). 행정책임을 진 법인은 사법책임이 배제되지 않는다(제18조). 제5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연방정부, 주정부, 연방주, 지자체 등은 각각 공공변호사나 법문 담당기관, 공공장관청(Ministerio Publico)을 통해 위반행위를 한 법인에게 재산의 몰수, 법인행위의 중지, 법인의 해산, 인가·지원 등의 금지 등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19조). 법인의 강제해산은 법인이 위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하거나 촉진했다는 사실이나 법인이 위법행위의 특혜내용이나 불법이익을 은폐하거나 위장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제19조 제1항). 민사제재는 개별적이나 누적적으로 적용된다(제19조 제3항).

3. 감면제도(Do Acordo de Leniência)

부패방지법은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감면제도에 관한 장을 두고 있다(제5장). 감면제도는 브라질 독점금지법(Lei N°12.529/2011)에도 이미 도입되어 있다(제7장). 그러나 영국 뇌물법의 적절한 절차(Adequate Procedures)²¹⁾와 달리 효과적인 준수프로그램은 책임에 대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행정제재기관은 조사나 행정절차를 효과적으로 협력하도록 책임법인과 감면약정을 할 수 있다(제16조). 협의내용은 위반행위의 내용, 조사 시 위법행위를 입증한 정보와 문헌의 지체없는 수집 등이다. 감면약정이 시행되면 법인은 제6조(II)와 제19조(IV)의 제재가 면책되고, 행정벌의 2/3가 감축된다(제16조 제2항). 그러나 감면약정은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면책하지 않는다(제16조 제3항). 감면약정은 협력의 실효성과 절차의 유용한 결과를 보장하는 요건을 제시해야 한다(제16조 제4항). 감면약정은 약정에 서명하고 조건에 구속되는 법인이라면 법적, 사실상 동일한 경제집단의 법인에게도 적용된다(제16조 제5항). 감면의 시행에 관한 제안은 약정시행이후 조사의 이익과 행정절차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제16조 제6항). 감면약정의 불승인은 조사된 불법행위의 인지로 추정되지 않는다(제16조 제7항). 감면약정의 위반 시 법인은 행정기관이 위반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새로운 감면약정을 체결할 수 없다(제16조 제8항). 감면약정은 위법행위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21) 영국 뇌물법에 의하면 영리단체는 자신과 관계있는 자의 뇌물제공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적절한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항변을 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제7조 제2항).

다(제16조 제9항).

4. 기타

1) 시효

부패방지법은 행정기관이 위반행위를 안 날로부터, 위반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간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다(제25조). 위반행위 조사의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시효는 중단된다.

2) 관할권

부패방지법은 위법행위가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브라질 법인이 외국공무원에게 한 위법행위에도 적용된다(제28조).

IV. 결 어

브라질 부패방지법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아직 시행 초기로 집행에 의문을 제시하는 비판적 견해도 있지만²²⁾, 국내외적으로 브라질 부패방지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OECD는 브라질 부패방지법의 이행평가를 2014년 6월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브라질 부패방지법은 연방법이지만, 브라질 주정부에서도 부패방지법을 시행하기 위한 주 법을 제정하고 있다. 토칸칭스 주(Tocantins)는 최초로 2013년 12월 13일 부패방지법을 규율하기 위한 시행법(Decree n° 4,954/2013)을 제정했고, 상파울루 주(Sao Paulo)도 2014년 1월 30일 부패방지법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법(Decree n° 60,106/2014)을 공포했다.²³⁾

브라질 부패방지법은 OECD 뇌물방지협약, UN 부패방지협약,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영

22) PAULO, SÃO, Brazil's new anti-corruption law - Hard to read, The Economist, 2014.1.29, <http://www.economist.com/blogs/schumpeter/2014/01/brazil-s-new-anti-corruption-law>.

23) 브라질 주법의 현황에 대해서는 Marinez, Ana Paula and Araugo, Marianan Tavares de, What To Expect From Brazil's New Anti-Corruption Law, ETHIC Intelligence, 2014. 2, <http://www.ethic-intelligence.com/experts/400-what-can-be-expected-from-brazil-s-new-anti-corruption-law/> 참조.

국의 뇌물법 등의 내용을 반영한 법으로서 부패방지법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첫째, 국내 공무원 뿐만 아니라 해외공무원을 동시 적용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법인의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셋째,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브라질 부패방지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적극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와 집행이 필요하고, 위반행위 보고의 유인책과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더 나아가 국제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²⁴⁾

우리나라도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은 1998년 12월 28일 제정, 1999년 2월 15일 시행했고, UN 부패방지협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2008년 3월 28일 제정, 2008년 4월 26일 시행했다.

우리나라 부패방지법제는 브라질 부패방지법과 달리 국내공무원과 외국공무원을 구분하여 규율하는 등 분산되어 있다. 우리나라 부패방지법제는 국내공무원에 대해서는 2008년 부패방지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²⁵⁾이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받는 자(공무원)의 제재 위주로 규정되어 있고 주는 자(법인)의 제재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다. 외국공무원에 대해서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법인의 형사책임 중심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향후 브라질 부패방지법을 참고하여 국내외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에 대한 법인의 행정책임, 민사책임, 형사책임은 물론 감면제도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부패방지법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24) Zaheer, Sonia, Brazil's Landmark Clean Companies Act: Comparison to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and Issues (March 1, 2014), <http://ssrn.com/abstract=2417155>.

25) 2001년 7월 24일 제정, 2002년 1월 25일 시행된 (구) 부패방지법이 폐지되고, 2008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참고문헌

- 2000년대 초 브라질 부패방지법제의 현황, 2012, <http://www.ropesgray.com>.
- 2010년 법안, http://www.camara.gov.br/proposicoesWeb/prop_mostrarintegra?codteor=734764&filename=PL+6826/2010.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해외 반부패 입법동향 및 대응방안연구” -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에 관한 한국기업 및 정부에 대한 지침서-, 국민권익위원회 용역연구보고서, 2013.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2013)와 뇌물공여지수(2011), <http://www.transparency.org/country>.
- 브라질 부패방지법 포르투갈어 원문과 영어 번역본, <http://www.loboeibeas.com.br/wp-content/uploads/2013/11/Anti-Corruption-Act.pdf>.
- 브라질 주법의 현황, 2014. 2, <http://www.ethic-intelligence.com/experts/400-what-can-be-expected-from-brazil-s-new-anti-corruption-law/>.
- 브라질 형법 개정, <http://www.oecd.org/daf/anti-bribery/brazil-oecdanti-briberyconvention.htm>.
- 영국 뇌물법(2010) 원문과 번역문, <http://www.acrc.go.kr/acrc/file/file.do?command=downFile&encodedKey=MjU0MzJfMQ%3D%3D>.
- 오택림, “미국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에 관한 연구”, 법조 Vol.669, 2012.
- OECD 뇌물방지협약의 가입 현황, <http://www.oecd.org/daf/anti-bribery/countryreportsontheimplementationoftheoecdanti-briberyconvention.htm>.
- UN 부패방지협약의 서명 및 가입 현황, <http://www.unodc.org/unodc/en/treaties/CAC/signatories.html>.
- 호세프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된 부패방지법의 규정, <http://www.internationaltradecomplianceupdate.com/blog.aspx?entry=882>.
- Boadle, Anthony, Brazil enacts tough anti-bribery law required by OECD, Reuters, 2013.10.2, <http://www.reuters.com/article/2013/08/02/us-brazil-bribery-idUSBRE97111A20130802>.
- Latham & Watkins, CommentaryBrazilian Anti-Corruption Law: 7 Implications and Challenges for Companies Doing Business in Brazil, No. 1629, 2014.1.6 <http://www.lw.com/thoughtLeadership/lw-brazil-anti-corruption-law>.
- OECD, WorkingGrouponBribery, AnnualReport2007, <http://www.oecd.org/daf/anti-bribery/anti-briberyconvention/40896091.pdf>.
- OECD, Germany : Review of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1997, Recommendation, <http://www.oecd.org/investment/anti-bribery/anti-briberyconvention/2386529.pdf>.
- Stroker, Franck, How Brazil’s Clean Companies Act will Affect Emerging Markets, Cipe Development Blog, 2014.2.13., <http://www.cipe.org/blog/2014/02/13/how-brazils-clean-companies-act-will-affect-emerging-markets>.
- Zaheer, Sonia, Brazil’s Landmark Clean Companies Act: Comparison to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and Issues , March 1. 2014, <http://ssrn.com/abstract=2417155>.